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2. 3. 7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3. 7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9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3. 18) 상정
 - 제9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3. 18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소사구 보건소장 정영구)

제안이유

- 보건소에 운동처방센터와 재활운동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, 이용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규정하여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조정함(안 제3조 및 제5조)
- 운동처방센터 및 재활운동실 이용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이용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의안번호	제573호
의결년월일	2002. 3. 20 (제94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3. 7

제출자 : 부천시장

 제안이유

- 보건소에 운동처방센터와 재활운동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, 이용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규정하여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협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 주요골자

-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조정함(안 제3조 및 제5조)
- 운동처방센터 및 재활운동실 이용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이용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지역보건법 제14조"를 "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"로 하고, 제3조 중 "의료보험법"을 "국민건강보험법"으로 하며 제5조 중 "의료보호법"을 "의료급여법"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기타 수수료) 운동처방센터 및 재활운동실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5에 의하여 정수한다.

제8조제1항제6호 중 "단, 의료보험법 제34조의"를 "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"로 한다.

별표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5]

운동처방센터 및 재활운동실 수수료(제7조의2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종 목	기준	수수료	비 고
운동처방센터	운동처방센터 이용수수료	과정	5,500 (2,800)	최근 6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결과 지참시 2,700원 감액
재활운동실	재활운동실 이용수수료	월	20,000	

※ () 금액은 감액시의 수수료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</u> 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</u>															
제3조(진료수가)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<u>의료보험법</u> 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정수한다.	제3조(진료수가) <u>국민건강보험법</u>															
제5조(타법령에 의한 수가) <u>의료보호법</u>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	제5조(타법령에 의한 수가) <u>의료급여법</u>															
<u><신설></u>	<u>제7조의2(기타 수수료) 운동처방센터 및 재활운동실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5에 의하여 정수한다.</u>															
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(생략) 1.~5. (생략) 6.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인자의 진료비. 단, <u>의료보험법 제34조의 규정</u> 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	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(현행과 같음) 1.~5. (현행과 같음) 6. <u>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</u>															
[별표5]	[별표5] <u>운동처방센터 및 재활운동실 수수료</u> (단위 : 원)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종 목</th><th>기준</th><th>수수료</th><th>비 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운동처방 센 터</td><td>운동처방 센 터 이용수수료</td><td>과정</td><td>5,500 (2,800)</td><td>최근 6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결과 지참시 2,700 원 감액</td></tr> <tr> <td>재 활 운 동 실</td><td>재활운동실 이용수수료</td><td>월</td><td>20,000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* () 금액은 감액시 수수료임</p>	구 분	종 목	기준	수수료	비 고	운동처방 센 터	운동처방 센 터 이용수수료	과정	5,500 (2,800)	최근 6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결과 지참시 2,700 원 감액	재 활 운 동 실	재활운동실 이용수수료	월	20,000	
구 분	종 목	기준	수수료	비 고												
운동처방 센 터	운동처방 센 터 이용수수료	과정	5,500 (2,800)	최근 6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결과 지참시 2,700 원 감액												
재 활 운 동 실	재활운동실 이용수수료	월	20,000													